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899 발의연월일: 2022. 3. 18.

발 의 자:이종배・구자근・김선교

김성원 • 류성걸 • 박덕흠

성일종 • 조명희 • 조수진

추경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농·어업인의 영농·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,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.

이들 감면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, 농어업 경영비의 급격한 증가로 농·어민의 실익이 줄고 농·어업생산 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·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, 농·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농업용·축산업용·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

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로 2년간 연장함(안 제105조제1항).

나.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·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(안 제10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9 1
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	
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	
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	
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	
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	
고, 제5호 및 제6호는 <u>2022년 1</u>	<u>2024년 1</u>
<u>2월 31일</u> 까지 공급한 것에 대	<u> 2월 31일</u>
해서만 적용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
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	
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	
이 경우 제9호는 <u>2022년 12월</u>	<u>2024년 12월 31</u>
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	<u>일</u>
적용하고, 제22호는 2024년 12	
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	

에만 적용한다.	
1. ~ 22. (생 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